

희망이 필요한 순간,



대한적십자사/인도법연구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 안내

1. 귀 기관과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적십자사는 국제법(제네바협약*)과 국내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해 우리 정부의 국제인도법**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66. 8. 16. 발효한 1949년 제네바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무력 충돌 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는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규제하는 국제공법

3. 흰색 바탕에 붉은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 시 보호와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당국이나 각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4. ‘적십자 표장’을 평시에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무력 충돌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언론보도와 SNS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사용을 안내해 왔습니다.

5. 그럼에도, ‘적십자 표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여겨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로 출원해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6. 제5류(의약품 등), 제10류(의료기기 등), 제44류(병원 및 약국 등) 품목에 대해서는 상표법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 협조사항

가. 기관 내 자체 교육

나. 산하 지부(회) 공문 하달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내용 전파

붙임: 적십자 표장 상표 출원 결과 1부. 끝.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장

수신자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방사선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사단법인 한국약제학회, 대한통증학회, 한국구명구급협회,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평가원,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대한정형외과학회, 한국고혈압관리협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수혈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한국심리치료사협회,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담당

김동현

팀장

목정하

소장

결재 25/09/11
박은영

시행 인도법연구소-488 (2025.09.11.)

접수 0

우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인재개발원 /

전화 033-811-0282

/ 전송

/ kkss804@redcross.or.kr / 부분공개(1)



대한적십자사_적십자표장 상표심사결과.pdf (101.92K)